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6호 2023. 6. 19.(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115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3-116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허가 고시 5
- 하동군 고시 제2023-1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
- 하동군 고시 제2023-118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7
- 하동군 고시 제2023-1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4
- 하동군 고시 제2023-122호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입주희망자 모집 15
- 하동군 고시 제2023-123호 악양읍종교전지구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고(하수도(하수관로) 설치(변경)인가 고시 44
- 하동군 고시 제2023-12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47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833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9
- 하동군 공고 제2023-864호 하동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60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3-810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 69
- 하동군 공고 제2023-846호 잔너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의견 수렴 공고 72

회 담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23-115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 6. 1.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 재 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4762	35-06-08.2456	127-53-46.2030	중부	278810.61	281708.69	114.263	북천면 직전리 114-4	2023.05.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63	35-06-10.5295	127-53-45.8734	중부	278880.92	281699.71	112.573	북천면 직전리 83	2023.05.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64	35-06-13.3126	127-53-41.4296	중부	278965.68	281586.39	123.244	북천면 직전리 산87-22	2023.05.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65	35-07-38.7776	127-52-57.0797	중부	281589.58	280439.81	137.681	북천면 서황리 산31-1	2023.05.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66	35-07-39.8926	127-52-58.3646	중부	281624.23	280472.04	136.997	북천면 서황리 산33-1	2023.05.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67	35-07-40.4380	127-53-00.5044	중부	281641.52	280526.07	139.351	북천면 서황리 산33-1	2023.05.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68	35-06-38.1687	127-52-02.9281	중부	279709.64	279084.99	124.257	북천면 사평리 산105-1	2023.05.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69	35-06-35.8054	127-52-04.9742	중부	279637.25	279137.45	108.471	북천면 사평리 1219-3	2023.05.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70	35-06-34.8185	127-52-00.1341	중부	279605.78	279015.13	108.397	북천면 사평리 1219-3	2023.05.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71	35-09-33.0699	127-47-21.1937	중부	285040.51	271907.46	85.184	청암면 평촌리 1184-3	2023.05.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72	35-09-33.1608	127-47-17.8677	중부	285042.64	271823.26	85.346	청암면 평촌리 1191-1	2023.05.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73	35-09-37.5821	127-47-17.7776	중부	285178.88	271819.90	95.292	청암면 평촌리 1220-1	2023.05.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74	35-11-54.2289	127-50-51.5438	중부	289434.67	277194.23	146.925	옥중면 월횡리 산84-3	2023.05.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75	35-11-57.8702	127-50-51.9616	중부	289546.98	277203.84	152.924	옥중면 월횡리 574	2023.05.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76	35-12-03.2847	127-50-54.1019	중부	289714.31	277256.64	155.594	옥중면 월횡리 570	2023.05.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77	35-02-03.9212	127-53-13.5820	중부	271273.52	280949.48	18.313	진교면 백련리 161-3	2023.05.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78	35-02-08.6720	127-53-11.1996	중부	271419.39	280887.79	21.198	진교면 백련리 131	2023.05.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79	35-02-11.4308	127-53-10.0410	중부	271504.15	280857.66	24.220	진교면 백련리 132-3	2023.05.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80	35-13-35.2203	127-53-14.3251	중부	292578.66	280778.44	71.652	옥중면 두양리 296-1	2023.05.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81	35-13-33.7350	127-53-20.0886	중부	292534.19	280924.60	73.972	옥중면 두양리 5-4	2023.05.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82	35-11-51.6818	127-53-22.8614	중부	289389.62	281022.88	64.854	옥중면 병천리 177-5	2023.05.2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83	35-11-58.3798	127-53-22.9179	중부	289596.06	281022.46	63.617	옥중면 병천리 149	2023.05.2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84	35-12-05.1715	127-53-22.9054	중부	289805.37	281020.27	63.844	옥중면 병천리 153	2023.05.2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85	35-11-23.9288	127-47-16.6000	중부	288456.11	271764.12	216.904	청암면 상이리 산93-3	2023.05.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86	35-11-21.3141	127-47-16.8627	중부	288375.58	271771.49	209.835	청암면 상이리 산98-8	2023.05.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87	35-11-19.9475	127-47-15.4355	중부	288333.18	271735.64	203.809	청암면 상이리 산102	2023.05.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88	35-09-13.7112	127-53-19.3368	중부	284520.33	280977.22	141.214	옥중면 정수리 264-6	2023.05.3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89	35-09-14.1371	127-53-22.5383	중부	284534.18	281058.14	136.617	옥중면 정수리 264-3	2023.05.3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90	35-09-16.2077	127-53-22.8449	중부	284597.85	281065.33	131.729	옥중면 정수리 264-3	2023.05.31	철재	세계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고시 제2023-116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고시합니다.

- 아 래 -

점용자	주 소	하천 명칭	점용위치	점용 면적(㎡)	점용목적	유효기간
김*현	하동읍 군청로 163-14	섬진 강	하동읍 비파리 132-2	19.8	부유식 계류장	2023.4.10. ~2026.4.09.

2023년 6월 05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23-1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고시합니다.

- 아 래 -

점용자	주 소	하천 명칭	점용위치	점용 면적(㎡)	점용목적	유효기간
이*주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107	섬진강	화개면 탐리 850	810	단순경작을 위한 토지점용	2023.6.02. ~2028.6.01.

2023년 6월 02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23-118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지적기준점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 6. 7.

하 동 군 수

구분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원점	소재지	폐기일	표지재질	비고
	점명	좌표		점명	좌표						
		X	Y		X	Y					
지적도근점	37	174183.81	268571.06	W37	274492.06	268644.90	중부	하동읍 읍내리 167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42	174894.39	268560.07				중부	하동읍 읍내리 123-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46	174995.30	268999.93				중부	하동읍 비파리 882	2022-12-30	맨홀	
지적도근점	67	175617.32	267533.68	W67	275925.60	267607.66	중부	하동읍 두곡리 511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68	175701.83	267581.38	W68	276010.10	267655.35	중부	하동읍 두곡리 511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69	175715.91	267390.32	W69	276024.14	267464.32	중부	하동읍 두곡리 673-1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71	175181.42	267571.79	W71	275489.73	267646.15	중부	하동읍 읍내리 1146-1	2022-12-30	맨홀	
지적도근점	79	174866.71	267862.31	W79	275175.00	267936.65	중부	하동읍 읍내리 1294-1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81	174904.48	267924.85	W81	275212.77	267999.22	중부	하동읍 읍내리 1261-6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85	174758.42	268063.46	W85	275061.94	268143.60	중부	하동읍 읍내리 265-6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11	176336.48	267202.50	W111	276644.63	267276.38	중부	하동읍 두곡리 736-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32	177551.61	264683.86				중부	하동읍 화심리 1637-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33	177669.52	264576.37				중부	하동읍 화심리 1392-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34	177802.90	264481.61				중부	하동읍 화심리 169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66	173678.21	269852.99				중부	하동읍 신기리 401-45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361	175821.83	270171.58	W361	276130.09	270243.69	중부	적량면 동산리 183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62	175553.00	270591.04				중부	적량면 동산리 180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70	176360.65	270648.40	W370	276668.78	270722.51	중부	적량면 관리 129 - 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81	179926.47	270160.39				중부	적량면 동리 1106 - 2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388	180851.62	269550.72	W388	281159.91	269624.93	중부	적량면 서리 1766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91	181109.00	269372.39	W391	281417.27	269446.58	중부	적량면 서리 335 - 2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401	178629.88	271422.94				중부	적량면 동리 364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402	178435.06	271031.33				중부	적량면 동리 40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406	179149.68	270553.67				중부	적량면 동리 산231 - 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425	177121.46	270407.15	W425	277429.80	270481.29	중부	적량면 우계리 948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426	177360.54	270313.30				중부	적량면 우계리 168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435	174780.31	270937.58				중부	적량면 고절리 1237 - 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447	175617.90	272373.06	W447	275926.43	272447.27	중부	적량면 동산리 1776	2022-12-30	맨홀	
지적도근점	448	175805.90	272463.22				중부	적량면 동산리 1774	2022-12-30	맨홀	
지적도근점	454	182902.60	268839.70	W454	283210.56	268913.61	중부	적량면 서리 63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457	183809.98	268316.32				중부	적량면 서리 산110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464	175380.84	271581.19				중부	적량면 동산리 205 - 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472	175891.78	272501.08				중부	적량면 동산리 24 - 4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475	184320.89	274670.24	W475	284629.19	274744.43	중부	횡천면 전대리 산167 - 4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501	184182.52	275460.59				중부	횡천면 전대리 939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46	178529.71	273643.82				중부	횡천면 횡천리 159 - 20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88	178282.69	272590.86				중부	횡천면 남산리 173 - 2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604	179091.07	273952.65	W604	279339.28	274026.82	중부	횡천면 횡천리 1019 - 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631	179374.85	274882.28	W631	279683.10	274956.38	중부	횡천면 여의리 669 - 5(666-7)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632	178368.13	274726.74	W632	279676.38	274800.83	중부	횡천면 여의리 623 - 7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640	178502.75	274329.11	W640	278813.14	274398.70	중부	횡천면 횡천리 1022 - 4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652	169323.21	271896.53	W652	269630.72	271970.52	중부	고전면 신월리 1449-2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661	169967.22	273347.90	W661	270275.34	273422.20	중부	고전면 범아리 산149 - 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662	169963.61	273505.41	W662	270271.81	273579.77	중부	고전면 범아리 산153 - 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664	169996.47	273794.68	W664	270304.71	273868.95	중부	고전면 범아리 산157-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685	170589.59	277711.56	W685	270897.87	277785.80	중부	고전면 명교리 619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689	168247.04	274281.53	W689	268554.91	274356.30	중부	고전면 대덕리 432 - 1	2022-12-30	맨홀	
지적도근점	718	169802.17	276349.11	W718	270110.09	276423.05	중부	고전면 고하리 165 - 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720	171429.19	274059.35	W720	271737.35	274133.52	중부	고전면 성천리 1218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743	169597.14	276362.21	W743	269905.33	276436.64	중부	고전면 성평리 41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759	168535.18	272682.42	W759	268843.20	272756.74	중부	고전면 범아리 989 - 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765	169342.45	276403.42				중부	고전면 성평리 492 - 3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769	165849.99	275734.03	W769	266162.29	275776.15	중부	금남면 덕천리 1051 - 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781	165172.65	274447.38				중부	금남면 진정리 1038-4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794	164482.35	281908.95	W794	264790.04	281983.59	중부	금남면 중평리 676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812	163440.51	277051.48	W812	263748.57	277126.10	중부	금남면 대송리 781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863	165989.75	276254.12	W863	266297.65	276328.35	중부	금남면 덕천리 1175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1578	160933.25	271770.07				중부	금성면 갈사리 189 - 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580	161100.35	271805.16	W1580	261408.37	271879.56	중부	금성면 갈사리 910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581	161189.57	271748.55	W1581	261497.56	271822.95	중부	금성면 갈사리 226 - 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582	161280.89	271617.32	W1582	261588.87	271691.73	중부	금성면 갈사리 333 - 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587	162017.61	271391.22				중부	금성면 갈사리 720 - 1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606	162186.41	275028.93				중부	금성면 가덕리 1634 - 3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1616	161216.45	271198.63				중부	금성면 갈사리 817-3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1619	161634.10	275457.62				중부	금성면 가덕리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620	161588.05	275530.73				중부	금성면 가덕리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621	161341.51	275637.89				중부	금성면 가덕리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622	161220.68	275321.76				중부	금성면 가덕리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627	162994.49	273461.71				중부	금성면 가덕리 1640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1634	163348.42	272674.70	W1634	263656.22	272749.04	중부	금성면 공항리 1500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636	163322.06	272438.30	W1636	263629.93	272512.66	중부	금성면 공항리 1497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643	163659.11	270520.39				중부	금성면 고포리 430 - 4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1649	163731.85	270862.47	W1649	264040.12	270936.68	중부	금성면 고포리 405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1650	163542.97	270821.66	W1650	263851.27	270895.85	중부	금성면 고포리 439 - 3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1654	163374.59	270919.39				중부	금성면 고포리 501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1754	163352.91	270948.05	W1754	263661.15	271022.28	중부	금성면 고포리 496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865	164535.38	275725.17	W1865	264843.31	275799.16	중부	금남면 진정리 223 - 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869	164602.01	276677.51				중부	금남면 대송리 857	2022-12-30	맨홀	
지적도근점	1870	164500.99	276654.85				중부	금남면 대송리 산68 - 27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928	165141.46	281871.05				중부	금남면 중평리 754 - 2	2022-12-30	맨홀	
지적도근점	1967	163896.87	274207.15	W1967	264204.94	274281.35	중부	금성면 가덕리 781 - 17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980	162136.39	273641.61				중부	금성면 가덕리 1598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1992	161042.16	271187.19				중부	금성면 갈사리 1240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000	173454.13	272009.61				중부	적량면 고절리 214 - 3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001	173441.94	271872.36				중부	적량면 고절리 1249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074	179773.78	263490.34				중부	하동읍 흥룡리 1736-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086	160875.71	271757.98	W2086	261183.75	271832.47	중부	금성면 갈사리 195 - 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091	161744.96	271288.34	W2091	262053.11	271362.52	중부	금성면 갈사리 910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092	161837.03	271296.87	W2092	262145.16	271371.06	중부	금성면 갈사리 910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118	180508.99	270319.07	W2118	280823.07	270394.57	중부	적량면 동리 898 - 4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158	166770.21	273224.65	W2158	267078.11	273298.89	중부	고전면 전도리 252 - 4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209	161661.24	278074.36	W2209	261969.29	278148.66	중부	금남면 송문리 738 - 1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247	161330.98	279607.79	W2247	261639.34	279682.76	중부	금남면 노량리 537 - 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358	170601.13	270720.21				중부	하동읍 목도리 47 - 6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439	162386.65	271936.05	W2439	262694.77	272010.19	중부	금성면 갈사리 1207-3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495	159933.00	276159.44				중부	금남면 대도리 208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497	159852.48	276102.67				중부	금남면 대도리 208 - 1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502	164132.90	280875.24	W2502	264440.99	280950.02	중부	금남면 대치리 676 - 20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508	164441.75	280441.02	W2508	264749.76	280515.70	중부	금남면 대치리 924 - 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512	164214.20	280863.48	W2512	264522.20	280938.22	중부	금남면 대치리 679 - 3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681	167398.29	274774.37	W2681	267706.37	274848.77	중부	금남면 계천리 819 - 1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682	167536.50	274849.54	W2682	267844.60	274923.92	중부	금남면 계천리 817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691	167111.40	275714.79	W2691	267419.46	275789.22	중부	금남면 덕천리 814 - 1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692	167026.79	275862.76				중부	금남면 덕천리 792 - 1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2775	184433.31	275590.55	W2775	284741.62	275664.55	중부	횡천면 전대리 산82 - 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793	183173.29	275625.85				중부	횡천면 전대리 408-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794	183109.36	275568.26				중부	횡천면 전대리 408 - 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795	183001.36	275531.93				중부	횡천면 전대리 1370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796	182972.98	275446.71				중부	횡천면 전대리 산32 - 4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800	182756.49	275171.38	W2880	283064.76	275245.57	중부	횡천면 전대리 1385	2022-12-30	맨홀	
지적도근점	2801	182728.44	275075.34				중부	횡천면 전대리 138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886	159664.40	276062.27				중부	금남면 대도리 20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2993	164771.43	279253.68				중부	금남면 대치리 산58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005	181043.80	268754.31	W3005	281352.05	268828.28	중부	적량면 서리 130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019	164506.28	275634.18				중부	금남면 진정리 226-2(226-3옥상)	2022-12-30	기타	
지적도근점	3042	174372.88	268393.44	W3042	274681.03	268467.68	중부	하동읍 읍내리 199-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059	160938.72	271765.29	W3059	261246.66	271839.62	중부	금성면 갈사리 910-30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060	160843.08	271734.74	W3060	261151.02	271809.06	중부	금성면 갈사리 195-1	2022-12-30	플라스틱	
지적도근점	3103	161460.72	273496.54	W3103	261768.62	273570.99	중부	금성면 가덕리 1543-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104	161390.81	273202.60	W3104	261698.70	273277.06	중부	금성면 가덕리 1537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162	162880.85	275908.76	W3162	263189.07	275983.18	중부	금남면 진정리 1280-1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166	162592.97	275678.22	W3166	262901.18	275752.66	중부	금성면 가덕리 298-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169	162921.12	276137.18	W3169	263229.35	276211.59	중부	금남면 대송리 951-18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174	163581.57	276047.56	W3174	263889.79	276121.93	중부	금남면 진정리 1293-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3266	168771.47	272636.05	W3266	269079.43	272710.32	중부	고전면 범아리 989-2	2022-12-30	플라스틱	
지적도근점	3267	168780.39	272553.82	W3267	269088.36	272628.07	중부	고전면 범아리 산74-1	2022-12-30	플라스틱	
지적도근점	3268	168673.62	272590.57	W3268	268981.61	272664.83	중부	고전면 범아리 989-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29	179614.69	273609.07	W5029	279922.95	273683.15	중부	횡천면 횡천리 716-4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30	179681.83	273695.87	W5030	279990.08	273769.95	중부	횡천면 횡천리 1042-4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31	179690.58	273630.26	W5031	279998.84	273704.34	중부	횡천면 횡천리 1042-4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35	178871.50	274413.72	W5035	279179.76	274487.80	중부	횡천면 횡천리 102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37	178857.54	274536.73	W5037	279165.79	274610.80	중부	횡천면 횡천리 102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41	178812.47	274615.04	W5041	279120.72	274689.11	중부	횡천면 횡천리 38-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42	178750.69	274623.47	W5042	279058.94	274697.54	중부	횡천면 횡천리 57-4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43	178795.00	274522.83	W5043	279103.25	274596.90	중부	횡천면 횡천리 53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55	178539.48	274217.56	W5055	278847.73	274291.63	중부	횡천면 횡천리 1033-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56	178510.53	274152.49	W5056	278818.78	274226.56	중부	횡천면 횡천리 356-4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58	178637.66	274228.68	W5058	278945.91	274302.75	중부	횡천면 횡천리 296-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90	178761.68	269334.71	W5090	279069.89	269408.76	중부	적량면 우계리 635	2022-12-30	플라스틱	

지적도근점	5091	178687.84	269383.85	W5091	278996.05	269457.91	중부	적량면 우계리 산131	2022-12-30	플라스틱	
지적도근점	5092	178678.98	269405.95	W5092	278987.20	269480.01	중부	적량면 우계리 644-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094	178624.21	269429.47	W5094	278932.42	269503.52	중부	적량면 우계리 647-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117	170840.86	277164.68	W5117	271149.17	277238.91	중부	고전면 명교리 30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123	170638.60	277076.47	W5123	270946.90	277150.70	중부	고전면 명교리 442	2022-12-30	표석	
지적도근점	5124	170640.01	277134.86	W5124	270948.32	277209.10	중부	고전면 명교리 460-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130	170540.23	277050.86	W5130	270848.54	277125.09	중부	고전면 명교리 463-6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132	170525.33	277207.07	W5132	270833.64	277281.30	중부	고전면 명교리 354(391-12안근)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135	170260.42	277158.57	W5135	270568.73	277232.81	중부	고전면 명교리 510-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137	170327.74	277140.38	W5137	270636.04	277214.61	중부	고전면 명교리 630(479-5안근)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140	170415.51	277133.24	W5140	270723.82	277207.48	중부	고전면 명교리 476-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192	164514.50	282010.84	W5192	264822.65	282085.51	중부	금남면 중평리 598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401	180590.06	265564.24	W5401	280898.26	265638.34	중부	하동읍 흥룡리 629-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414	179689.17	264178.30	W5414	279997.38	264252.41	중부	하동읍 흥룡리 490-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454	176908.97	266017.32	W5454	277216.87	266091.53	중부	하동읍 화심리 636-3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467	177142.00	265003.18	W5467	277449.92	265077.40	중부	하동읍 화심리 966-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475	176736.24	265632.75	W5475	277044.15	265706.95	중부	하동읍 화심리 851-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482	176180.37	267307.49	W5482	276488.52	267381.33	중부	하동읍 두곡리 산16-2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485	176104.48	267485.64	W5485	276412.64	267559.49	중부	하동읍 두곡리 721-1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495	176877.49	267919.83	W5495	277185.70	267993.60	중부	하동읍 두곡리 산6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615	174138.95	269352.93	W5615	274447.08	269426.79	중부	하동읍 비파리 239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681	171952.18	270886.40	W5681	272260.38	270960.65	중부	하동읍 목도리 428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682	171954.78	270966.30	W5682	272262.99	271040.55	중부	하동읍 목도리 439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706	171491.51	270800.16	W5706	271799.72	270874.42	중부	하동읍 목도리 310-5	2022-12-30	철재	
지적도근점	5827	175277.83	272424.21	W5827	275586.03	272498.32	중부	횡천면 학리 1173-4	2022-12-30	철재	

하동군 고시 제2023 - 119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06. 12.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3-30, 32호
2. 하천의 명칭 : 황천강
2. 허가연월일 : 2023.06.12.
3. 점용자 : 하동읍장
4. 점용의 목적 : 전망대 설치 3개소(토지의 점용)
5. 점용위치(면적) : 하동읍 목도리 29-186번지(8㎡) , 29-187번지(16㎡)
6. 점용허가 기간 : 2023.06.12.~ 영구

하동군 고시 제2023 - 122호

서식 7

더불어 나눔주택 입차인 공모 공고(안)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노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거약자에게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23. 6. 14.
하동군수

1. 신청기간 : 2023. 6. 14. ~ 2023. 6. 30.(17일간)
2. 신청자격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순 위	입 주 자 격	증빙서류
1순위	-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 청년 - 저소득층(수급자) - 장애인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부부검증자료(예식장 계약서 등),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2순위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귀농·귀촌인(입주 시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 이전) - 문화예술인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3순위	- 일반인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입주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 청 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귀농·귀촌인 : 타 시·군 동지역에서 이주하거나(공고일 현재 전입 2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예정인 귀농·귀촌자

3. 신청방법 및 입주자선정방법

- 접 수 처 : 하동군 도시건축과(afds@korea.kr)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공고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선정방법 : 공고기간 내 추천, 공고기간 경과 후 선착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23. 06. 30. 18시이후, 당첨자에게만 개별통보(유선)

4. 입주가능(예정)일 : 2023년 06월 30일 이후부터(※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5. 임대주택현황

임대주택 번호	위 치	모집 세대	임대 현황				임대료(만원)		비고
			구 조	해당 층	방수	면적(m ²)	보증금	월세	
하동군 관리카드 NO.2	화개면 법하길 29-1 (삼신리 627)	1	블럭조	1	3	64.58	500	25	

6.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해당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의무임대기간(2~5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반값 임대주택임
* 의무임대기간 시작일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산정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해당 시·군과 주택소유자 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권리관계에 있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따로 선정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함.
- 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7. 기타 문의사항 : 하동군 담당부서[☎ 055)880-2135]

8. 입주신청서식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서식 7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입주신청건물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원수 :

○ 연 락 처 :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신혼부부 증명서류 등

위 신청인은 하동군군에서 공급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에
입주코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세부 시행지침
2020. 3.



경 상 남 도
(건축주택과)

I 사업개요

1. 목 적

- 구도심 및 농어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을 정비하여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구도심 및 농어촌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

3.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 사업물량 및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사 업 량(동)	51	9	9	13	20	
사 업 비	763	133	135	195	300	
재 원	도 비	381.5	66.5	67.5	97.5	150
	시·군비	381.5	66.5	67.5	97.5	150

II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근 거 :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5조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량 및 사업비 : **13동, 195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 (동당 사업비 지원조건)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 (최대 15백만원)
-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의무 임대기간(2~5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 임대주택 :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다음의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 가능한 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포함]
- 입주대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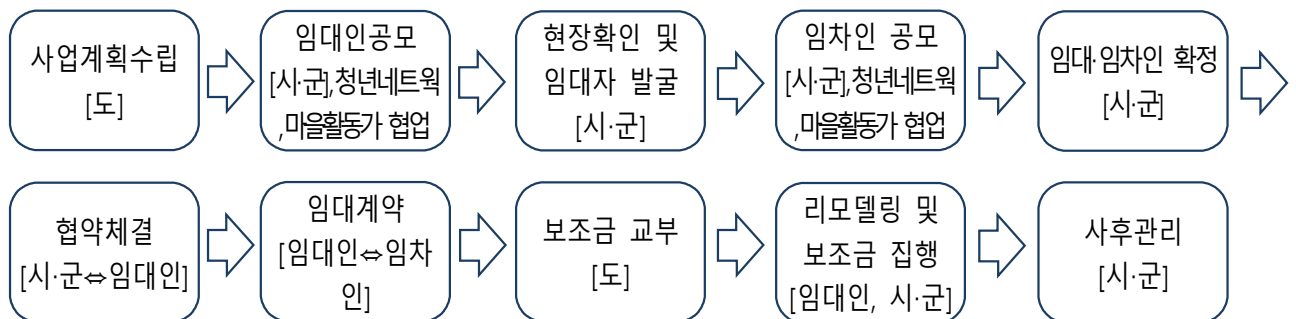
* (지원금액) 6백만원 이하 : 2년

6백만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5백만원)×60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 공급방법
 - 협약 체결 : 관할 시장·군수 ⇔ 임대자
 - 임대차계약 : 임대자 ⇔ 입주자
- 전·월세 반값 :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예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문의하여 파악된 주변 주택 전·월세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

○ 업무 흐름도



2. 임대자 모집 및 발굴

○ 임대자 모집 :

- 기존 공모방식 모집 : 공고문(안) [서식1]
- 청년네트웍 및 마을활동가의 협업에 의한 모집

○ 임대신청 :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에 신청 [서식2]

○ 현장확인

- 입주 가능성(접근성 등), 규모, 시설물 노후도(활용 가능성), 소유자의지 (반값임대 여부 등), 5년 이내 재개발 여부 등 시·군 담당자가 해당 시설물 확인 [서식3]

○ 임대기간 : 2 ~ 5년간

- 임대차계약 시 2 ~ 5년간 임대기간으로 설정
- 더불어 나눔주택 관리카드[서식5]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관리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사전 의견 조율

-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요구사항을 조율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군에 변경 요청 가능
- 임대료는 해당 시·군이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가 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 임대인, 임차인과 3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임대자 유의사항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시·군에 보고 하여야 함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 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함(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 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잔여임대기간은 월할로 계산하고 잔여일수는 버림)
예시) 지원금 1,500만원을 받고 12개월 10일간 임대한 경우, 1,200만원 반환
⇒ 1,2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60개월*12개월)]

3. 임차인 모집 및 발굴

○ 임차인 모집 방식

- 기존 공모방식 모집 : 공고문(안) [서식기]
- 청년네트웍 및 마을활동가의 협업에 의한 모집
- ※ 입주자는 상기 방식이 원칙이나 공모 등을 통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 가능(단, 입주자 자격요건은 1, 2순위에 한함)

○ 모집 시 입주대상 자격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 경합 시 추천

- 1순위 : 신혼부부¹⁾,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²⁾, 수급자³⁾, 장애인⁴⁾
- 2순위 : 차상위계층⁵⁾, 한부모가정⁶⁾, 귀농·귀촌인⁷⁾, 문화예술인
- 3순위 : 일반인(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시·군과 주택소유자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의방식으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효력이나 권리관계에 있어 규제대상이 아님

○ 임차금액은 해당 시·군의 권고(안)을 따르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입주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2) 청 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3)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한부모가정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7) 귀농·귀촌인 : 타 시·군 동지역에서 이주하거나(공고일 현재 전입 2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예정인 귀농·귀촌자

시·군, 임대인, 임차인과 3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 기타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름

4. 협약체결(시·군⇔임대자)

- 협약 체결 당사자 : 관할 시장·군수 ⇔ 임대자
- 주요 협약내용
 - 건물 및 소유자 현황, 목적 및 임대기간,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지원, 자부담 금액, 기타 특약사항 등
 - ▶ 협약서(안)[\[서식4\]](#)의 내용은 협의결과에 따라 실정에 맞게 협약조건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며, 분쟁예방을 위하여 협약 전 사업진행절차 및 조건 미 이행시 사업비 회수 등 전반사항 상세 설명

5. 사업시행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 예산과목 :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 예산집행, 공사감독, 정산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맞게 집행·시행
 - 대수선 등 건축행위 수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
 - 공사감독 : 시·군 담당공무원 임명
 - ▶ 감독자는 사업계획(리모델링 내용과 비용의 적정성) 검토, 시공감독, 준공 확인 후 보조금 집행·정산(실 집행금액)
- 공사 시행 시기 :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계약 완료 후

6.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주택별 관리카드[\[서식5\]](#) 비치(임대의무기간 동안)
- 반기별 입주 및 반값임대 여부 확인
- 임대인, 임차인 명부관리[\[서식8\]\[서식9\]](#)

7. 사업 주체별 역할

○ 사업대상자(임대인)

- 리모델링 공사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 및 증빙자료 제출
 - ▶ 공사계약서
 -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계산서(면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
 - ▶ 건축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수선 등 건축행위 수반시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이행

○ 시장·군수

- 임대·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
- 임대 희망자 신청서 접수
- 임대예정 주택의 현장확인

< 현장확인 시 고려할 사항 >

- 구조의 안전성, 노후도(사용승인일 등), 방치기간
- 리모델링 계획의 적정성(규모 및 공사 후 임대가능 여부)
- 신청지 주변의 여건(교통, 기반시설 등)

- 입주 희망자 신청서 접수
- 임대인 협약체결
 - ※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주변 주택 전·월세 시세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조정
- 시·군비 추경예산 확보
- 빈집리모델링 지도·감독
- 보조금 지급·정산
- 의무임대기간(2 ~ 5년) 동안 사후관리
- 차기 연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연중 수시 임대자 발굴
-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 활용)
- 임대·입주희망자 명부 관리
- 임대·임차인 모집 시 청년네트웍 및 마을활동가 협업

○ 경상남도

- 사업계획 수립
- 도비보조금 교부
-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유관기관 홈페이지 활용)
- 보조금 교부·정산

○ 청년 네트워크 및 마을활동가

- 임대·임차인 모집 시 청년네트워크 및 마을활동가 협업

서식 1**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안)**

경상남도에서는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 .

○ ○ 시장군수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위치한 다음의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 20년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포함]
- 입주대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등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15,000천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5년 *
 - * (지원금액) 6백만원 이하 : 2년
 - 6백만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5백만원)×60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시군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 도청 건축과 부서소식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비치

○ 신청기한 : 공고 후 해당 물량 소진 시까지

3. 진행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 및 확정(시·군) → 임차인 모집 → 시장·군수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보조금 교부 → 빈집 리모델링 → 입주

4. 기타사항

○ 입주자는 공모하여 입주가 원칙이나 공모를 통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 가능

※ 청년네트웍 및 마을활동가를 활용한 모집 가능

○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예시) 주변 주택 월 임대료가 20만원 수준일 경우 10만원 이하로 조정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함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함(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월할 계산하여)하여야 함

5. 문의사항 : 건물 소재지 해당 시·군 건축 관련부서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위시 주택정책과	225-4214	김해시 공동주택과	330-3919	의령군 도시재생과	570-3534	남해군 도시건축과	860-3488	거창군 도시건축과	940-3604
진주시 건축과	749-8846	밀양시 건축과	359-5378	함안군 도시건축과	580-2715	하동군 도시건축과	880-2135	합천군 도시건축과	930-3433
통영시 건축과	650-5745	거제시 건축과	639-4674	창녕군 도시건축과	530-1386	산청군 도시교통과	970-7362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211-4333	
사천시 건축과	831-3210	양산시 건축과	392-3034	고성군 건축개발과	670-2193	함양군 도시건축과	960-4325		

서식 2

임대신청서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신청서

건 물 현 황	소 재 지				건축 년도	
	연면적(m ²)/층수				구 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 선 계 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사업비 산출 - - ○ 지원 요청액 : 원					
임 대 희 망 사 항	임대방법			임대료		
	전세	월세	전월세	전세	월세	보증금

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 하

첨부서류 : 예상 총 공사비 내역

서식 3

더불어 나눔주택 현장조사서

더불어 나눔주택 현장조사서

00시.군

접수번호 제 호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공가현황	소재지		용 도	
	연면적(층수)		건축면적	
현장조사결과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내용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무허가건물 제외,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가급적 제외)			
리모델링 가능여부				
건물상태 (노후도 등)				
예상 임대료 (소유자 요구 임대료)	※ 해당 시.군이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가 되도록 임차료를 권고할 수 있음 ※ 임대주택의 입지, 노후정도, 규모, 임차인 가족수 등을 기록하고 임대료 계산			
주변시세 및 임대료 적정여부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 2개이상 확인			
인근학교거리 (학생입주시)				
소유자 면담결과				
조사자 의견				

2020. . .

직 성명 (인)

(뒷면)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서식 4

협약서(안)

더불어 나눔주택 협약서(안)

대상주택현황

○ 건물현황

소재지				건축년도	
연면적(m ²)/층수				구조	
건물내부현황(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 소유자현황

소유자 인적사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택의 사용목적 및 임대기간

- 사용목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등을 위한 주택 반값임대
- 반값 임대기간 :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2 ~ 5년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전·월세 임대료는 주변시세 반값을 원칙으로 한다.
 - ※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총공사비 원(사업비 지원 원)
 - ※ 예산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80%까지 지원(최대 1,500만원까지)

- 공사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특약사항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 임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의무임대기간은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2 ~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 및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시·군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다.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잔여임대기간 월할 계산)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이주로 인하여 공실이 발생하여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임대기간의 연장 또는 지원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협약서는 2부를 작성, 관할시장·군수와 주택소유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총 공사비 산정내역 1부.

2020. . .

00시장·군수 000(인)

000 (인)

점검 및 관리 일지

일 자 별

점검(관리) 개요

반기별 점검

서식 6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신청 접수부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신청 접수부					
연번	신청인	소재지	연락처	사업추진 가능여부 (○,×)	비고(추진불가 사유 등)
1	김나눔				
2	도지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서식 7

더불어 나눔주택 입차인 공모 공고(안)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노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거약자에게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20. . .

○○시장·군수

1. 신청기간 : 2020. 3. . ~ 00. 00.(30일간)
2. 신청자격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순 위	입 주 자 격	증빙서류
1순위	-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 청년 - 저소득층(수급자) - 장애인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부부검증자료(예식장 계약서 등),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2순위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귀농·귀촌인(입주 시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 이전) - 문화예술인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3순위	- 일반인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재(입주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 청 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귀농·귀촌인 : 타 시·군 동지역에서 이주하거나(공고일 현재 전입 2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예정인 귀농·귀촌자

3. 신청방법 및 입주자선정방법

○ 접 수 처 : 예정 임대주택 소재 시·군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위시 주택정책과	225-4214	김해시 공동주택과	330-3919	의령군 도시재생과	570-3534	남해군 도시건축과	860-3488	거창군 도시건축과	940-3604
진주시 건축과	749-8846	밀양시 건축과	359-5378	함안군 도시건축과	580-2715	하동군 도시건축과	880-2135	합천군 도시건축과	930-3433
통영시 건축과	650-5745	거제시 건축과	639-4674	창녕군 도시건축과	530-1386	산청군 도시교통과	970-7362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211-4333	
사천시 건축과	831-3210	양산시 건축과	392-3034	고성군 건축개발과	670-2193	함양군 도시건축과	960-4325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공고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선정방법 : 공고기간 내 추첨, 공고기간 경과 후 선착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20. 00. 00. 00시이후, 당첨자에게만 개별통보(유선)

4. 입주가능(예정)일 : 2020년 00월 00일 이후부터(※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5. 임대주택현황

임대주택 번호	위 치	모집 세대	임대 현황				임대료(만원)		비고
			구 조	해당 층	방수	면적(m ²)	보증금	월세	
00시·군 관리카드 NO.									

6.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해당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의무임대기간(2~5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반값 임대주택임

* 의무임대기간 시작일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산정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해당 시·군과 주택소유자 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권리관계에 있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따로 선정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함.
- 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7. 기타 문의사항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055)211-4333]
해당 시·군 담당부서(접수처 안내 연락처 참고)

8. 입주신청서식 : 각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서식 7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입주신청건물 : **해당임대주택 주소**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원수 :

○ 연 락 처 :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신혼부부 증명서류 등

위 신청인은 경상남도과 00시·군에서 공급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에 입주코자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하동군 고시 제2023 - 123호

<악양·옥종·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도(하수관로) 설치(변경)인가 고시

하동군 악양면, 옥종면, 고전면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악양·옥종·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11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변경)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하 동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하동군수
- 주 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2. 사업 목적

- 악양면, 옥종면, 고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식 하수도를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 위 치 : 악양면(외둔·상신·미서마을), 고전면(신방마을), 옥종면(두방·두양·한계·신촌·의양·불무·동곡마을) 일원
- 면 적 : (기준)1.515km² → (변경)1.806km²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규모

구 분	처리시설	마을명	하수관로(m)			펌프장 (개소)	배수설비 (개소)	자가펌프 (개소)	비고
			계	자연유하	압송				
합 계			20,539	15,224	5,315	18	360	15	
악양면	상하대촌	외둔	1,484	1,141	343	1	30	1	
	정동	상신	2,264	2,264	-	-	65	1	
	소축	미서	1,760	1,501	259	2	36	2	
옥중면	숲촌	두방	1,407	1,257	150	4	25	2	
		두양	1,890	1,759	131	1	35	4	
	추동	한계	1,816	760	1,056	2	22	-	
	북방	신촌	821	761	60	1	32	-	
	정수	의양	2,167	1,719	448	1	33	1	처리시설 증설 60m ³ /일
		불무	3,578	1,787	1,791	3	31	-	
		동곡	1,941	1,191	750	2	28	1	
고전면	선소	신방	1,411	1,084	327	1	23	3	

※ 정수처리구역은 경상남도 설치인가 완료(경상남도 고시 제2022-636호)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구 분	총 계	악양면			옥중면				고전면
		상하대촌	정동	소축	숲촌	추동	북방	정수	선소
처리구역면적 (km ²)	1.806	0.378	0.280	0.336	0.113	0.154	0.111	0.244	0.190

6. 사업시행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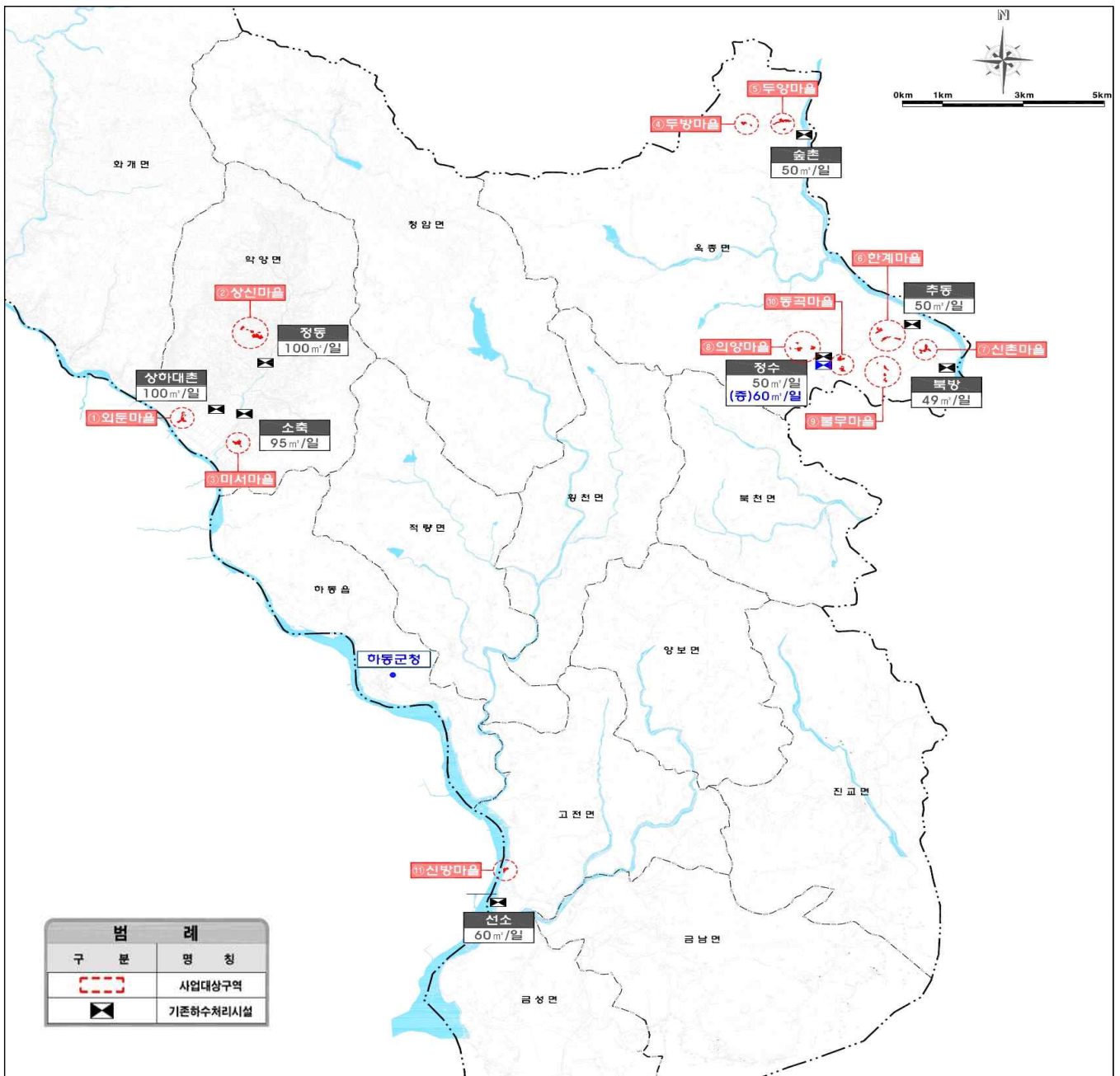
- 착공예정일 : 2023년 6월
-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붙임(용지조서) 참조(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 기타 관련 서류는 하동군청 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계 (☎055-880- 2603)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도



붙임 용지조서 1부.(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하동군 고시 제2023 - 124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14-11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3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43-1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6.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8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14-11	20230615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117-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158-64	20230615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24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579-46	20230615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업무구분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경서대로143-1	20230615	건축물 합병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하동군 공고 제2023-833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체육시설 추가 조성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규모에 맞는 사용료 부과 및 군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확대를 통한 체육복지증진을 원하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및 군민 감면율(범위) 조정,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부과(안 제11조, 제14조) 만 나이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하동군(참조 : 시설체육과 체육시설담당, 전화 055-880-2382, FAX 055-880-2069, sk199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6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4.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 5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하동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1. 체육시설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기본시간	요금		비고	
			평일	토·공휴일		
공설운동장 (육상경기)	체육경기	3시간	11,000	15,000		
	체육이외	3시간	18,000	22,000		
공설운동장 (천연잔디축구장)	체육경기	3시간	100,000	150,000		
	체육이외	3시간	150,000	200,000		
실내체육관 (면적 2,000㎡이하)	체육경기	1시간	5,000	6,000		
	체육이외	1시간	7,000	9,000		
실내체육관 (면적 2,000㎡이상)	체육경기	1시간	7,000	8,000		
	체육이외	1시간	9,000	11,000		
스포츠 파크	인조잔디 축구장	체육경기	1시간	20,000	25,000	
		체육이외	1시간	25,000	30,000	
	실내 테니스장	체육경기	1면/1시간	7,000	8,000	
		체육경기	1면/1시간	5,000	6,000	
	족구장	체육경기	1면/1시간	5,000	6,000	
	풋살장	체육경기	1구장/1시간	7,000	8,000	
읍면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1시간	15,000	20,000		
	체육이외	1시간	20,000	25,000		
인조잔디야구장	체육경기	1시간	25,000	35,000		
실내야구연습장	체육경기	1시간	5,000	6,000		

나. 연습이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이용기준	회원	비회원		비고
		연 이용료	월 이용료	1회 이용료	
파프골프장	4시간	60,000	-	4,000	1회 이용시 하동군민은 50% 감면할 수 있다
테니스장· 족구장	2시간	100,000	20,000	2,000	1회 이용시 야간/공휴일은 이용료에 50% 가산한다

1. “1회 이용자”란 1일 입장권을 예매 또는 발권하여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2. “회원”란 하동군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소속 클럽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회원 연이용료는 소속 클럽 대표자 명의로 일괄 납부하며, 분납도 가능하다.
3. “비회원”란 하동군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소속 클럽에 가입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이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8.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이용료를 수납한다.
9. 이용료는 본 조례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부속시설

(단위 : 원)

종		별	기준	요금	비 고
조명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10kW미만	시간당	6,000	
		10~20kW	시간당	8,000	
		20~30kW	시간당	10,000	
		30kW이상	시간당	12,000	
	공설운동장		3시간	50,000	
냉·난방기	실내체육시설 (면적 2,000㎡미만)		시간당	15,000	
	실내체육시설 (면적 2,000㎡이상)		시간당	20,000	
앰프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1회	10,000	
전기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1회	5,000	별도시설 사용시
전광판	실내·외 체육시설		시간당	10,000	
기타 필요한 사용료 실제사용료					

3. 광고물의 게시·계약

(단위 : 원)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	◦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한다.
	1제곱미터당 (월액)	-	◦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1등급	5,000	◦ 1등급 : 본부석 정면 주위로 한다.
	2등급	4,000	◦ 2등급 : 본부석을 중심으로 좌우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계약 행위	1일 1개	2,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u>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u>의 사람을 말한다.</p> <p>10. “학생”이라 함은 <u>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u>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p> <p>11. “일반인”이라 함은 <u>만 19세</u>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u>만 65세</u>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p> <p>1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6세 이상 12세 이하</u> ----- -----.</p> <p>10. ----- <u>13세 이상 18세 이하</u> ----- -----.</p> <p>11. ----- <u>19세</u> ----- ----- <u>65세</u> ----- -----.</p> <p>12. (현행과 같음)</p>
<p>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신설></p> <p>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p>	<p>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5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u></p> <p>③ ----- -----</p>

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 15. (생 략)

16.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
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7. 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
인 단체가 체육시설물을 15명 이
상 사용하는 경우(다만, 천연잔디
구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8. (생 략)

④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16. -----
----- 18세 -----

<삭 제>

1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본조신설 2012. 7. 17.]

하동군 공고 제2023-864호

하동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군민의 책무(안 제5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안 제6조)
 - 안전점검과 보완(안 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안 제8조)
 - 재난예방조치 등(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6. 14. ~ 2023. 7. 4.(20일간)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하동군 안전총괄과 ☎ 055-880-2256, FAX 880-2249,
e-mail fish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동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축제·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하동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최자"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후원자"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11.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 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및 주최자·주관자가 없 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여, 밀집도가 단위면 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 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의 옥외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 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후원자 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기관·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자·주관자인 옥외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자인 옥외행사
3. 군이 기관·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옥외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장소·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 5.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처에 관한 사항
-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7.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여,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로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는 제3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

고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 또는 주관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를 중단할 것을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810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하동군에서 시행하는『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및 제10조(출입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

2023. 6.

하동군수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72-3 ~ 두곡리 756번지
- 사 업 량 :
 - 식생블럭 설치 L=196m, 전석 쌓기 L=221.5m
 - 고지배수로 L=754m, 도로이설L=260.0m, 수문펌프1식, 부대공 1식 등
- 사 업 비 : 25,683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72-3 ~ 두곡리 756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22. 1. ~ 2023. 12.
6. 출입목적 :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토지분할 측량, 공사관련 등
7. 출입할 토지의 구역 : 붙임 토지조서 참조
8.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9.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종료시 까지
10.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 21.(20일간)
11. 문의사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계(☎055-880-2533)

붙임 출입할 토지의 조서 1부. 끝.

붙임 1. 출입할 토지의 조서

편입토지세목조서

순번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m2)	편입면적 (m2)	소 유 자	비고
1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72-3	도	135	75	장*선	
2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산58-1	임	1,686	24	순*안*찬*공* 광*구*종*	
3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6-7	답	2,075	1417	하*철	
4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60-1	답	1,871	532	하*철	
5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5-1	답	393	393	강*영	
6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산56-1	임	4,132	52	김*찬	
7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산56-3	도	295	116	김*찬	
8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6-2	창	549	549	하*철	
9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6-5	구	327	327	김*봉	
10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6-3	구	512	478	여*재	
11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7	잡	11,363	725	김*봉	
12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2	답	1,256	47	장*엽 외 1인	
13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1-3	답	929	929	남*철	
14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1	잡	998	998	남*철	
15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7-1	임	542	41	하*농* 개*조*	
16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1-1	답	13	3	윤*선	
17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11	전	69	69	이*성	
18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4-2	답	83	83	조*동	
19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1	제	145	108	김*윤	
20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2	답	311	117	김*윤	
21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3	구	595	590	김*윤	
22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59-1	답	1,955	12	이*레	
23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4-3	제	460	363	조*동	
24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3-2	전	383	242	이*성	
25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2-4	제	194	83	이*찬	
26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2-14	제	297	201	이*찬	
27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3-4	천	537	372	김*인	
28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3-2	천	1,093	113	김*인	
29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8	과	960	91	박*주	
30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산56-4	도	36	4	김*찬	
31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8-7	대	320	12	박*주	
32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3-3	답	78	78	신*순	
33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3	창	3,829	136	여*옥	
34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33-1	답	4,465	114	신*순	
35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833-4	창	57	57	여*옥	
36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2	답	3,331	586	정*자	
37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6	답	863		최*인	

하동군 공고 제2023-846호

잔너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의견 수렴 공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7호, 2020.11.03.)의 규정에 따라 「잔너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누락 및 허위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12일

하 동 군 수

1. 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2023.06.12.~2023.6.18.)
※ 상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 붙임파일 참조
3. 의견제출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가. 우편 :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나. 이메일 : jjookkoomi@korea.kr
4.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누락 및 허위사실 등을 확인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880-2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업무중복도 의견수렴공고
2. 업무중복도 공개자료(업체별) - 홈페이지 붙임파일 참조
3. 업무중복도 의견서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에 대한 의견서

□ 용역명 : 잔너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대상자					의견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 등)
소속	성명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처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2023. . .

하동군수 귀하